FPRI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Consulate General
vs
Steve Yoo

(대법원 2019.7.11, 2017두38874)

2020.03.29

Update

- 2020.3.19 초안작성
- 2020.3.29 행정법 처분 보완

[결론]

판결에 의해 영사관은 법무부와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사증 발급관련 재검토를 하면 됨
(기존과 달라질 부분은 없다고 봄, F4 비자발급 불허 유지 될 것임, 발급이 된다 하더라도 입국금지 상태임)

(문제점1) 본 건은 입국시 불허한 사실이 있는데 정식통보가 안되어서 문제라고 한 부분
(행정력 범위 외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의 절차중 일부 예외가능함)
(입국불허 효력이 즉시 발생하여 영향을 미친 경우인데, 통보를 문제삼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음, 실제 이 부분은 대법원 판결문에 기재조차 되어있지 않음)

(문제점2) 외국인 범죄자의 비자발급요청결과의 전화통보를 문제점으로 본 부분
(이게 문제가 되는가?,
서류로 발급하였다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가?)

□ 케이스 스터디 요약 (Consulate General vs Steve Yoo Case)

- 대법원에서는 법무부의 행정처분에 문제(통보절차누락)가 있었다고 하였으나, 행정절차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하여는
  "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해당

A. 즉, 외국인에게 행정처분결과를 명확하게 전달할 의무는 없음
(재외동포라 하더라도 병역의무를 기피한 도피범죄자로 볼수있는 이에게는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음)

당시 입국금지 후 바로 다음날 입국 금지

B. 당시 입국금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음
(이후 2009년 공항에서 입국이 금지되어 돌아감)

C. 이와 같은 상황에서 F4비자를 신청 시
당시 법무부의 행정처분이 " 처분"이 아닌걸로 판단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

*** 현재 남은 절차 : 비자 발급, 입국금지 해제 (일단 병역기피자 이므로 F4 비자 발급 불가임)

대법원 선고 2017두38874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소 식

새소식
포토뉴스
전국법원소식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사법교류
법원동정
법원공보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제목	대법원 선고 2017두38874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9-07-11	조회수	2370
첨부파일	[190711 선고] 보도자료 2017두38874(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2002년 법무부장관에 의해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가 2015년에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위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주LA 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고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대법원 2017두38874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2002년 법무부장관에 의해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가 2015년에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위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주LA 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고 파기환송하였음(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1. 사안의 내용과 소송 경과

▣ 사안의 내용

- 원고(스티브 승준 유, 한국명: 유승준)는 1976. 12. 15.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나, 2002. 1. 18.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국적의 재외동포임
- 병무청장은 2002년 1월 법무부장관에게 '원고는 공연을 위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는데, 원고가 재외동포의 자격으로 입국하여 방송활동, 음반출반, 공연 등 연예활동을 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이 병역의무를 경시하게 되며 외국국적 취득을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고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2002.2.2 스티브 유씨 입국시도 시 불허한 사실이 빠져있음

- 법무부장관은 2002년 2월 병무청장의 입국금지 요청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8호에 따라 원고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원고에게 통보를 하지는 않았음(이하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
- 원고는 2015년 8월 피고(주LA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2. 원고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원고가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하여 사증발급이 불허되었다. 자세한 이유는 법무부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통보하였고, 그 무렵 여권과 사증발급 신청서를 반환하였을 뿐,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았음(이하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

▣ 소송 경과

- 원심(= 1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처분이 아님

- 2002년에 있었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원고로서는 입국금지결정에 대하여 제소기간 내에 불복하였어야 함. 원고가 불복하지 않아 입국금지결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는 입국금지결정의 하자를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하자로 주장할 수 없음

2.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이 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다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①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됨.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②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입국금지결정을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 ①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음. 대외적으로 처분권한이 있는 처분청이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위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이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님.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②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증발급이나 입국허가에 대한 지시로서의 성격이 있음. 즉, 법무부장관이 사증발급권한을 위임받은 재외공관장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입국금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이나 입국허가결정을 하지 말라.'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③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그러므로 재량권 불행사가 아님 (사증발급 거부는 적법함)

■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함

● ① 출입국관리법의 사증발급에 관한 조항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의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함

● ② 처분의 근거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됨

● ③ 피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함

■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고려했어야 할 사정은 다음과 같음

사유 소멸 된바 없음

●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입국금지사유가 소멸할 경우 입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함. 입국금지의 결정권자인 법무부장관도 이러한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입국금지를 해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금고이상의 형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임

● ②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금지 제한을 받을 뿐임

병역의무는 면한것은 맞음.

● ③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적용되던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 의무를 면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음.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 당시 적용되던 재외동포법 또한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

02.2.2 브 유씨 금시도 시 한 사실 행정의사 로 볼수 있음

순 지시가 닌 처분으 로 봐야 함

인이 된 경우' 에도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함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

● ④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 의무를 면하였음을 이유로 한 제재조치로, 이때 의무 위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함.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을 유일한 이유로 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있어서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⑤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함

▣ 이 사건 재외동포체류자격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처분서 작성·교부'를 하지 않아 위법함

● ① 행정절차법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상대방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란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미함

● ②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그 성질상 행정절차법 제24조가 정한 '처분서 작성·교부'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또한 출입국관리법령에 사증발급 거부처분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로도 볼 수 없음

● ③ 피고는 2015년 9월 2일 원고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결과를 통보하고 그 무렵 여권과 사증발급 신청서를 반환하였을 뿐이고 원고에게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았음. 이 사

범죄자이자 외국인에게 전화 통보를 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봄

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가 인정되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처분서 작성·교부'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함

3. 판결의 의의

▣ 원고가 2002년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할 때까지 수년 간 대한민국에서 활발하게 연예활동을 하면서 많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공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원고는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음. 그러나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입법자가 정한 입국금지결정의 법적 한계, 사증발급 거부처분과 같은 불이익처분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비례의 원칙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재외동포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영사관(피고)에서 법적 권한을 행사하면 됨

▣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있기 13년 7개월 전에 있었던 입국금지결정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내부의 지시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입국금지결정만을 이유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사증발급 권한을 가진 행정청으로서 관계법령이 부여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즉,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유일한 이유로 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피고가 자신의 법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임

▣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불행사의 하자'로 위법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하자를 보완하여 원고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하여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함(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피고가 사증발급 거부처분 당시 고려하였어야 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들 사항들은 피고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때

에도 그대로 적용됨. 핵심은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 등 실정법에 규정된 입법자의 결단에 관한 것임. 특히 재외동포법이 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②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1] 등을 고려하여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 한편, 이 사건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어 '처분서의 작성과 교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힘

개방적 태도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이익에 해가 되는 외국인 범죄로 보고있음

38세넘어서도 특별히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임
(실제 법안도 구체화 됨)

원칙적으로 처분서의 작성과 교부는 필요할 수 있으나
외국인 범죄자에게 전화통보를 한 부분이 특별히 문제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즉 본 대법원판결은 스티브 유에게 표면적으로는 유리한 부분이 많게 작성이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존판결과 크게 영향이 다르지 않음

)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 당시 적용되던 재외동포법에 따른 것임.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 이후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 병역을 기피와 관련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할 수 있는 연령이 41세로 향상되었음. 개정 법률은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시 적용됨. 그러나 개정법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41세가 넘었으므로 병역기피와 관련한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189

2015구합77189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189

기본내용

청사배치

사건번호	2015구합77189	사건명	[전자]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원고	유 승 준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Steve Suengjun Yoo)}	피 고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
재판부	제 1 부 (나) (전화:02-2055-8311 [행정법원등 2층 행정과내])		
접수일	2015.10.21	중국결과	2016.09.30 원고패
원고소가	50,000,000	피고소가	0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상소인	원고	상소일	2016.10.17
상소각하일			
송달료, 보관금 중결에 따른 잔액조회	잔액조회		
판결도달일	2016.10.04	확정일	2020.03.12

심급내용

법 원	사건번호	결 과
대법원	2019두61090	2020.03.12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19누49993	2019.11.15 원고승
대법원	2017두38874	2019.07.11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68825	2017.02.23 항소기각

최근기일내용

상세보기

일 자	시 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 과
2016.06.27	14:00	변론기일	대법정(B201호)	기일변경(추후지정)
2016.07.15	14:50	변론기일	지하2층 B220호 법정	기일변경
2016.08.12	14:40	변론기일	지하2층 B220호 법정	변론종결
2016.09.30	14:00	판결선고기일	지하2층 B220호 법정	판결선고

› 최근 기일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상세보기

일 자	내 용
2016.08.08	피고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황선익 준비서면 제출
2016.08.11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윤종수,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양남주 류정선 김형수 준비서면 제출
2016.09.1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양남주 류정선 김형수 참고서면 제출
2016.10.17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양남주 류정선 김형수 항소장 제출

› 최근 제출서류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내용

구 분	이 름	중국결과	판결도달일	확정일
원고	1. 유 승 준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Steve Suengjun Yoo)}		2016.10.04	
피고	1.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		2016.09.30	2020.03.12
피고(보조참가)	2. 김종관	2016.07.14 기타		

대리인내용

구 분	이 름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 류정선,양남주,임상혁,김형수)
피고	소송수행자 장주영,정소현,박준호,천은욱,박준형
피고	소송수행자 박준형
피고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황선익,길진오,유일한,한승훈)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윤종수)
피고	소송수행자 곽우림

일자	내용	결과	공시문
2015.10.21	소장접수		
2015.11.02	피고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송달	2015.11.05 도달	
2015.11.19	피고 소송수행자 장주영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2015.11.23	원고 소송대리인 윤종수, 임상혁,양남주,류정선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5.11.23 도달	
2015.11.23	피고 장주영,정소현,박준호,천은욱,박준형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5.11.24 도달	
2015.11.23	피고 소송대리인 박준형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5.12.01 0시 도달	
2015.11.25	피고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황선익 소송위임장 제출		
2015.11.25	피고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황선익 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		
2015.12.07	피고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황선익 답변서 제출		
2015.12.07	원고 소송대리인 윤종수, 임상혁,양남주,류정선에게 답변서부본(15.12.07.자) 송달	2015.12.07 도달	
2016.01.25	피고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황선익 준비서면 제출		
2016.01.25	피고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황선익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16.01.26	원고 소송대리인 윤종수, 임상혁,양남주,류정선에게 준비서면부본(16.01.25.자) 송달	2016.01.26 도달	
2016.01.27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양남주 류정선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2016.01.28	기일변경명령		
2016.01.28	원고 소송대리인 윤종수, 임상혁,양남주,류정선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2016.01.28 도달	
2016.01.28	피고 장주영,정소현,박준호,천은욱,박준형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2016.01.28 도달	
2016.01.28	피고 소송대리인 박준형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2016.01.28 도달	
2016.01.28	피고 황선익,길진오,유일한,한승훈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2016.01.28 도달	
2016.01.28	MBC (주)문화방송에게 사실조회서 송달	2016.02.01 도달	
2016.01.29	변론기일(지하2층 B220호 법정 11:00)	기일변경	
2016.02.11	기타 문화방송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6.02.18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양남주 류정선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16.03.0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양남주 류정선 담당변호사 지정서(추가) 제출		
2016.03.0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양남주 류정선 준비서면 제출		
2016.03.0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양남주 류정선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제출		
2016.03.0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양남주 류정선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제출		
2016.03.0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양남주 류정선 증인신청서 제출		
2016.03.0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양남주 류정선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16.03.0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양남주 류정선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16.03.04	기타 홍영주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6.03.04	원고 유 승 준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Steve Suengjun Yoo)} 소송위임장 제출		
2016.03.04	변론기일(지하2층 B220호 법정 15:50)	속행	
2016.03.04	피고 장주영,정소현,박준호,천은욱,박준형에게 준비서면부본(16.03.03.자) 송달	2016.03.04 도달	
2016.03.04	피고 소송대리인 박준형에게 준비서면부본(16.03.03.자) 송달	2016.03.04 도달	
2016.03.04	피고 황선익,길진오,유일한,한승훈에게 준비서면부본(16.03.03.자) 송달	2016.03.04 도달	
2016.03.04	피고 황선익,길진오,유일한,한승훈에게 의견요청서 송달	2016.03.04 도달	
2016.03.04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요청서 송달	2016.03.08 도달	
2016.03.04	피고 장주영,정소현,박준호,천은욱,박준형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6.03.04 도달	
2016.03.08	주식회사 스포츠서울에게 사실조회서 송달	2016.03.10 도달	
2016.03.08	일간스포츠 주식회사에게 사실조회서 송달	2016.03.09 도달	
2016.03.09	피고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황선익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6.03.09	원고 소송대리인 류정선,양남주,임상혁,김형수에게 문서제출명령에대한의견서(16.03.09.자) 송달	2016.03.09 도달	
2016.03.1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윤종수에게 문서제출명령에대한 의견서(16.03.09.자) 송달	2016.03.14 도달	
2016.03.15	기타 법무부장관 문서제출명령회신 제출		
2016.03.15	원고 소송대리인 류정선,양남주,임상혁,김형수에게 문서제출명령회신(16.03.15.자) 송달	2016.03.16 도달	
2016.03.15	원고 소송대리인 윤종수에게 문서제출명령회신(16.03.15.자) 송달	2016.03.16 도달	
2016.03.15	피고 장주영,정소현,박준호,천은욱,박준형에게 문서제출명령회신(16.03.15.자) 송달	2016.03.15 도달	
2016.03.15	피고 박준형에게 문서제출명령회신(16.03.15.자) 송달	2016.03.23 0시 도달	
2016.03.15	피고 황선익,길진오,유일한,한승훈에게 문서제출명령회신(16.03.15.자) 송달	2016.03.15 도달	
2016.03.18	기타 주식회사 일간스포츠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6.03.18	원고 소송대리인 류정선,양남주,임상혁,김형수에게 사실조회회신(16.03.18.자) 송달	2016.03.18 도달	
2016.03.18	원고 소송대리인 윤종수에게 사실조회회신(16.03.18.자) 송달	2016.03.21 도달	

2016.03.18	피고 장주영,정소현,박준호,천은욱,박준형에게 사실조회회신(16.03.18.자) 송달	2016.03.22 도달
2016.03.18	피고 박준형에게 사실조회회신(16.03.18.자) 송달	2016.03.26 0시 도달
2016.03.18	피고 황선익,길진오,유일한,한승훈에게 사실조회회신(16.03.18.자) 송달	2016.03.18 도달
2016.03.22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양남주 류정선 김형수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16.03.24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에게 사실조회서 송달	2016.03.28 도달
2016.03.25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양남주 류정선 김형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6.03.25	피고 장주영,정소현,박준호,천은욱,박준형에게 문서제출명령에대한의견서(16.03.25.자) 송달	2016.03.25 도달
2016.03.25	피고 박준형에게 문서제출명령에대한의견서(16.03.25.자) 송달	2016.04.02 0시 도달
2016.03.25	피고 황선익,길진오,유일한,한승훈에게 문서제출명령에대한의견서(16.03.25.자) 송달	2016.03.25 도달
2016.04.07	기타 김종관 보조참가신청서 제출	
2016.04.08	원고 소송대리인 류정선,양남주,임상혁,김형수에게 보조참가신청서(16.04.07.자) 송달	2016.04.08 도달
2016.04.08	원고 소송대리인 윤종수에게 보조참가신청서(16.04.07.자) 송달	2016.04.08 도달
2016.04.08	피고 장주영,정소현,박준호,천은욱,박준형에게 보조참가신청서(16.04.07.자) 송달	2016.04.16 0시 도달
2016.04.08	피고 박준형에게 보조참가신청서(16.04.07.자) 송달	2016.04.16 0시 도달
2016.04.08	피고 황선익,길진오,유일한,한승훈에게 보조참가신청서(16.04.07.자) 송달	2016.04.08 도달
2016.04.12	기타 주식회사 스포츠서울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6.04.12	피고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황선익 준비서면 제출	
2016.04.12	원고 소송대리인 류정선,양남주,임상혁,김형수에게 준비서면부본(16.04.12.자) 송달	2016.04.14 도달
2016.04.12	원고 소송대리인 윤종수에게 준비서면부본(16.04.12.자) 송달	2016.04.14 도달
2016.04.15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양남주 류정선 김형수 서증 제출	
2016.04.15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양남주 류정선 김형수 서증제출서 제출	
2016.04.15	변론기일(지하2층 B220호 법정 16:00)	속행
2016.04.15	피고 장주영,정소현,박준호,천은욱,박준형에게 서증(16.04.15.자) 송달	2016.04.23 0시 도달
2016.04.15	피고 박준형에게 서증(16.04.15.자) 송달	2016.04.23 0시 도달
2016.04.15	피고 황선익,길진오,유일한,한승훈에게 서증(16.04.15.자) 송달	2016.04.15 도달
2016.04.15	피고 장주영,정소현,박준호,천은욱,박준형에게 서증제출서(16.04.15.자) 송달	2016.04.23 0시 도달
2016.04.15	피고 박준형에게 서증제출서(16.04.15.자) 송달	2016.04.23 0시 도달
2016.04.15	피고 황선익,길진오,유일한,한승훈에게 서증제출서(16.04.15.자) 송달	2016.04.15 도달
2016.04.15	피고 정부법무공단 황선익,길진오,유일한,한승훈에게 서증, 서증제출서부본(16.04.15.자) 송달	2016.04.15 도달
2016.04.22	기타결정	
2016.04.25	원고 소송대리인 류정선,양남주,임상혁,김형수에게 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정본 송달	2016.04.26 도달
2016.04.25	피고 황선익,길진오,유일한,한승훈에게 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정본 송달	2016.04.26 도달
2016.04.26	피고의 보조참가 김종관에게 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정본 송달	2016.05.02 폐문부재
2016.04.27	기타 (주)한국일보사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6.04.27	원고 소송대리인 류정선,양남주,임상혁,김형수에게 기타송달문서 송달	2016.04.27 도달
2016.04.27	피고 황선익,길진오,유일한,한승훈에게 기타송달문서 송달	2016.04.27 도달
2016.05.1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양남주 류정선 김형수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제출	
2016.05.1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양남주 류정선 김형수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16.05.1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양남주 류정선 김형수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16.05.10	피고의 보조참가 김종관에게 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정본 송달	2016.05.16 폐문부재
2016.05.11	피고 황선익,길진오,유일한,한승훈에게 의견요청서 송달	2016.05.11 도달
2016.05.11	병무청에게 사실조회서 송달	2016.05.13 도달
2016.05.11	법무부에게 사실조회서 송달	2016.05.12 도달
2016.05.13	피고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황선익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6.05.13	원고 소송대리인 류정선,양남주,임상혁,김형수에게 문서제출명령에대한의견서(16.05.13.자) 송달	2016.05.13 도달
2016.05.13	원고 소송대리인 윤종수에게 문서제출명령에대한의견서(16.05.13.자) 송달	2016.05.16 도달
2016.05.17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양남주 류정선 김형수 증인신문사항 제출	
2016.05.17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양남주 류정선 김형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6.05.17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양남주 류정선 김형수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제출	
2016.05.17	피고 장주영,정소현,박준호,천은욱,박준형에게 문서제출명령에대한의견서(16.05.17.자) 송달	2016.05.23 도달
2016.05.17	피고 박준형에게 문서제출명령에대한의견서(16.05.17.자) 송달	2016.05.25 0시 도달
2016.05.17	피고 황선익,길진오,유일한,한승훈에게 문서제출명령에대한의견서(16.05.17.자) 송달	2016.05.18 도달

2016.05.17	피고 장주영,정소현,박준호,천은욱,박준형에게 증인신문사항(16.05.17.자) 송달	2016.05.23 도달
2016.05.17	피고 박준형에게 증인신문사항(16.05.17.자) 송달	2016.05.25 0시 도달
2016.05.17	피고 황선익,길진오,유일한,한승훈에게 증인신문사항(16.05.17.자) 송달	2016.05.18 도달
2016.05.18	피고 소송수행자 곽우림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2016.05.18	공시송달처분	
2016.05.18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에게 문서송부촉탁서 송달	2016.05.20 도달
2016.05.18	피고의 보조참가 김종관에게 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정본 (2016.05.23. 14:00) 발송(공시송달)	2016.06.02 0시 도달
2016.05.23	변론기일(대법정(B201호) 14:00)	속행
2016.05.30	기타 병무청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6.05.31	기타 법무부 문서송부서 회신 제출	
2016.06.09	피고,1의 보조참가 김종관 항고장 제출	
2016.06.15	기타 법무부 사실조회회신(법무부) 제출	
2016.06.15	보정명령	
2016.06.16	피고의 보조참가 김종관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2016.06.22 도달
2016.06.17	기일변경명령	
2016.06.17	원고 소송대리인 류정선,양남주,임상혁,김형수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2016.06.17 도달
2016.06.17	원고 소송대리인 윤종수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2016.06.17 도달
2016.06.17	피고 황선익,길진오,유일한,한승훈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2016.06.17 도달
2016.06.17	원고 소송대리인 류정선,양남주,임상혁,김형수에게 추납통지서 송달	2016.06.17 도달
2016.06.27	변론기일(대법정(B201호) 14:00)	기일변경(추후지정)
2016.07.01	항고장각하명령	
2016.07.01	원고 소송대리인 류정선,양남주,임상혁,김형수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6.07.01 도달
2016.07.01	원고 소송대리인 윤종수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6.07.04 도달
2016.07.01	피고 장주영,정소현,박준호,천은욱,박준형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6.07.04 도달
2016.07.01	피고 박준형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6.07.09 0시 도달
2016.07.01	피고 황선익,길진오,유일한,한승훈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6.07.01 도달
2016.07.01	피고 곽우림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6.07.09 0시 도달
2016.07.04	피고의 보조참가 김종관에게 항고장각하명령등본 송달	2016.07.06 도달
2016.07.06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양남주 류정선 김형수 준비서면 제출	
2016.07.07	피고 장주영,정소현,박준호,천은욱,박준형에게 준비서면부본(16.07.06.자) 송달	2016.07.11 도달
2016.07.07	피고 박준형에게 준비서면부본(16.07.06.자) 송달	2016.07.15 0시 도달
2016.07.07	피고 황선익,길진오,유일한,한승훈에게 준비서면부본(16.07.06.자) 송달	2016.07.07 도달
2016.07.07	피고 곽우림에게 준비서면부본(16.07.06.자) 송달	2016.07.15 0시 도달
2016.07.08	피고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황선익 변론기일 변경신청서 제출	
2016.07.11	기일변경명령	
2016.07.11	원고 소송대리인 류정선,양남주,임상혁,김형수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2016.07.11 도달
2016.07.11	원고 소송대리인 윤종수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2016.07.11 도달
2016.07.11	피고 장주영,정소현,박준호,천은욱,박준형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2016.07.11 도달
2016.07.11	피고 박준형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2016.07.19 0시 도달
2016.07.11	피고 황선익,길진오,유일한,한승훈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2016.07.11 도달
2016.07.11	피고 곽우림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2016.07.19 0시 도달
2016.07.15	변론기일(지하2층 B220호 법정 14:50)	기일변경
2016.08.08	피고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황선익 준비서면 제출	
2016.08.09	원고 소송대리인 류정선,양남주,임상혁,김형수에게 준비서면부본(16.08.08.자) 송달	2016.08.09 도달
2016.08.09	원고 소송대리인 윤종수에게 준비서면부본(16.08.08.자) 송달	2016.08.10 도달
2016.08.11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윤종수,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양남주 류정선 김형수 준비서면 제출	
2016.08.12	변론기일(지하2층 B220호 법정 14:40)	변론종결
2016.08.12	피고 장주영,정소현,박준호,천은욱,박준형에게 준비서면부본(16.08.11.자) 송달	2016.08.20 0시 도달
2016.08.12	피고 박준형에게 준비서면부본(16.08.11.자) 송달	2016.08.20 0시 도달
2016.08.12	피고 황선익,길진오,유일한,한승훈에게 준비서면부본(16.08.11.자) 송달	2016.08.16 도달
2016.08.12	피고 곽우림에게 준비서면부본(16.08.11.자) 송달	2016.08.20 0시 도달
2016.09.1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양남주 류정선 김형수 참고서면 제출	
2016.09.13	피고 장주영,정소현,박준호,천은욱,박준형에게 참고서면(16.09.13.자) 송달	2016.09.21 0시 도달
2016.09.13	피고 박준형에게 참고서면(16.09.13.자) 송달	2016.09.21 0시 도달
2016.09.13	피고 황선익,길진오,유일한,한승훈에게 참고서면(16.09.13.자) 송달	2016.09.13 도달
2016.09.13	피고 곽우림에게 참고서면(16.09.13.자) 송달	2016.09.21 0시 도달
2016.09.30	판결선고기일(지하2층 B220호 법정 14:00)	판결선고

2016.09.30	판결선고기일(지하2층 B220호 법정 14:00)	판결선고
2016.09.30	원고 소송대리인 류정선,양남주,임상혁,김형수에게 판결정본 송달	2016.10.04 도달
2016.09.30	피고 황선익,길진오,유일한,한승훈에게 판결정본 송달	2016.09.30 도달
2016.09.30	종국: 원고패	

진행내용

기 일 ▾ 선택

일자	내용	결과
2016.01.29	변론기일(지하2층 B220호 법정 11:00)	기일변경
2016.03.04	변론기일(지하2층 B220호 법정 15:50)	속행
2016.04.15	변론기일(지하2층 B220호 법정 16:00)	속행
2016.05.23	변론기일(대법정(B201호) 14:00)	속행
2016.06.27	변론기일(대법정(B201호) 14:00)	기일변경(추후지정)
2016.07.15	변론기일(지하2층 B220호 법정 14:50)	기일변경
2016.08.12	변론기일(지하2층 B220호 법정 14:40)	변론종결
2016.09.30	판결선고기일(지하2층 B220호 법정 14:00)	판결선고

☐	선고일자 (확정일자)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주문	이유
	2016.09.30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189]	사증발급거부 ... [행정]	- - -	- - -

해당 판결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중이며, 처리완료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먼저 재판의 전제에 대한 부분이다. 1,2심과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기본적으로 다르게 전제하고 있는 것은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과 LA총영사의 사증발급 행위를 어떤 성격으로 보는지 여부이다. 먼저 1,2심은 법무부의 이 사건 입국금지 결정은 처분이고 LA총영사의 사증발급 행위는 이에 구속된다고 보았다. 반면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관리한 것으로 내부 지침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행정기관 내부에는 알려져 있는 지침일 지 몰라도, 그것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처분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LA총영사는 종전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의 성격을 다르게 봄으로써 LA총영사의 사증발급 행위의 구속성이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것이다. 원고 스티브 유 측이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기 때문에 이처럼 LA총영사에게 행위의 재량성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했던 것이다. 이렇게 LA총영사의 사증발급 행위가 재량행위임을 판단한 뒤 대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LA총영사가 자기에게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IRAC식 서술

1. 쟁점의 정리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등'이란 ① "행정청이 행하는 ② 구체적 사실에 관한 ③ 법집행으로서의 ④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라고 규정한다.
본 사안에서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의 처분성 인정유무에 따라 LA총영사관의 재량권일탈남용여부의 판단요소가 되므로 쟁점이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판례법리를 통해 검토한다.

2.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다음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한다.
(1) 적극적인 공권력의 행사일 것.
① 행정청(전통적 의미의 행정청뿐만 아니라 합의제기관, 실질적 의미의 처분을 하는 경우 법원이나 국회의 기관,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의 행정청 등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청)이 행하는 행위로
② 구체적 사실(규율대상이 구체적—시간적으로 1회적, 공간적으로 한정—이어야 한다)에 대한
③ 법집행행위(입법행위가 아니라 법의 집행행위어야한다)이며
④ 공권력행사(행정청이 공법에 근거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이어야 한다.

(2) 법적 행위일 것.
① 법적 행위란 행정소송법의 명문의 규정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견해와 판례는 법적 행위일 것을 요한다.
② 법적 행위란 외부적 행위이며,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변동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안의 검토
(1)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는 ① 행정청인 법무부장관이 행하는 행위로 ② 구체적 사실(스티븐 유의 입국에 관한)에 대한 ③ 법집행행위이며 ④ 공권력행사(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하였다)이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는 적극적인 공권력행사임은 해당한다.
(2) 법적 행위인지 여부
그러면 법적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판례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관리한 것으로** '내부 지침'에 불과해 외부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행정기관 내부에는 알려져 있는 지침일 지 몰라도, 그것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사안의 결론
본 사안에서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는 적극적인 공권력의 행사이나, 법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FPRI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2001.1.18
미국시민권취득
대한민국
국적포기한
재외동포
(재외동포 中
외국국적동포임)

병무청

입국금지
요청

법무부

2002.2.2
외국인 스티브유
입국금지
(행정처분)

2009.9.2
인천공항에서
입국거부

법무법인에서 F4추천, 즉 사전에 협의

미국세법

2014.7
(국외재산신고필요
미신고시 50%몰수)

재외동포(F-4) 비자발급 신청

2015.8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신청
(체류자격부여불가)

LA 총영사관

2015.9.2
비자발급거부

1심

2015.10.21
~
2016.9.30

2심

2017
2.23

김재형
대법관

대법원

2019
7.11
**논리가
이상함**

청와대

국민청원답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380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44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4.]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전문개정 2018. 3. 20.]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26. 재외동포 (F-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단순 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0조의3(영주자격) ①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기준·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약칭: 재외동포법)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17호, 2020. 2. 4., 일부개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 체류자격(이하 "재외동포체류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1. 4. 5., 2017. 10. 31., 2018. 9. 18., 2019. 12.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가.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2.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의 활동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관련의견

묵시적 행정처분 인정

법조광장

유승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문제점에 관한 管見

김중권 교수 (중앙대 로스쿨) | 입력 : 2019-07-15 오후 2:53:30

페이스북
트위터
인쇄
메일보내기
기사스크랩
스크랩 보기

7월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씨가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하급심의 핵심논거는 비자발급거부의 출발점이 된 입국금지결정이 존재하는 이상, 비자발급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비자발급거부의 출발점이 된 입국금지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였다. 사안의 관건은 과연 입국금지결정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12조제1항). 사증발급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예비조건 내지 입국허가의 추천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8.5.15. 선고 2014두42506판결). 따라서 외국인이 이미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여기서 과거 2002년 2월 2일에 있었던 입국거부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유씨는 2002년 1월 18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23일 대한민국 국적상실을 신고한 다음 바로 다음날 공연 목적으로 입국사증을 신청하였고, 2월 2일 오전 4시50분에 LA발 대한항공 KE012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유씨 자신이 군입대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돌변한 상황에 즈음하여 1월 28일 병무청장이 법무부에 '입국금지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법무부장관이 2월 1일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제4호, 제8호에 따라 원고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다. 2월 2일 인천공항에서 사증의 발급과는 별도로 유씨의 입국이 불허되었다. 입국허가의 발급의 형식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외국인의 여권에 입국허가의 관인(스탬프)을 찍는 것이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입국허가의 관인을 찍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입국금지결정이 공식적으로 내려진다. 법무부장관이 2월 1일 내린 내부적 결정으로서의 입국금지결정이 2월 2일의 입국거부를 통해 외부적으로도 행정처분으로 성립한 것이다. 이미 대법원이 대학총장임용제청의 제외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묵시적 행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한 이상(대법원 2018.6.15. 선고 2016두57564판결; 김중권, 행정법, 2019, 214면), 여기서의 입국금지결정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수긍하기 힘들다. 불이익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법상의 요청을 구비했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분명히 행정처분으로서의 입국금지결정이 존재한다. 사실 2월 2일 입국에서의 사증발급 역시 그 이전에 비록 내부적이라 하더라도 입국금지결정이 내려졌다면 거부되었을 것이다.

과거가 언제까지 현재나 미래를 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변함이 없으리라 굳게 믿었던 것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세상사이다. 2002년 행해진 행정결정이 강산이 거의 두 번 변할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은 분명 재고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행정법적으로 2002년 2월 2일의 입국금지결정에 대해 철회형식의 재심을 구한 다음 후속절차를 진행시켰어야 한다. 이번 대법원판결이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한 것은 분명하지만, 행정법교수로선 많이 아쉽다.

FPRI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처분이 아님을 주장- 신봉기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씨가 국적을 포기해 한국에 들어오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 신분이어서, 법무부가 공항에서 유씨 입국을 제재한 행위는 법적행위인 처분이 아닌 법무부 공무원이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풀이했다.

입국금지 결정과 무관하게 비자 없이 들어오려는 외국인을 공권력을 행사해 막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 교수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토대로 입국장에 (유씨가 포함된) 입국금지자 명단 목록이 전산으로 전달된 정도는 지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행정청이) 판단기준을 갖고 있던 건 행정처분이 아닌 것"이라고 했다.

또 "근본적으로 비자발급 문제가 생기지 않는 국민의 경우 입출국 금지 결정은 취소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 성격을 갖는데, 외국인은 비자발급 거부행위와 입국금지결정이라는 2개 행위가 존재하고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처분이 아님을 주장- 이재화

이재화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도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영사관에 '유권해석'을 해준 것"이라며 "입국금지 결정에 따라 영사관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건 행정청의 내부적 결정과정이라 지시이고, 공항에서 유씨 입국을 막은 건 사실행위"라고 말했다.

처분이 아님을 주장- 박태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박태준 변호사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정의를 들어 대법원 판단에 힘을 실었다.

박 변호사는 "법무부가 입국금지 통보를 처분 상대방에 보냈다면 당연히 처분이 된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아 행정청 내부 지시사항에 그칠 것 같다"며 "처분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하고, 구두로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가 공항에서 유씨 입국을 막은 사실 자체만으로 '묵시적 통보'가 성립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이는 기존 입국금지 결정에 따른 사실상의 공권력 행사라, 헌법소원 대상이 될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처분성은 인정이 안될 것 같다"고 봤다.

다만 신 교수는 "유씨의 병역면탈을 근거로 해 입국금지 결정을 한 행위를 행정처분 성격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겠다"며 학계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봤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12/96453535/1

FPRI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981

[법률칼럼] 당신의 입국을 거부합니다...②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6.11.23 09:02 | 댓글 0

(지난 호에 이어서 계속) 그런데, 입국금지처분이나 입국불허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 외국인은 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을까? 만일, 입국금지처분이나 입국거부처분이 국가의 고권적 행위라고 하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을 다투기가 어렵다.

▲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판례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처분은 원고의 입국요구에 대응하는 조치가 아니라 원고가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제재적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3. 6. 20. 선고 2012구합37227판결, 2013. 5. 10. 선고 2012구합41103판결)

다만,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은 외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국내 입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불허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인천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2구합2041판결)는 판례도 있다.

한편, 입국금지사유 중 하나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서, 서울고등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8호의 경우 같은 조의 다른 호들보다 더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입국금지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위에서 열거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누19750판결(원심))'고 판단한 적이 있다.

그러나, 위 사건의 상급심인 대법원에서는 원고의 범행내용과 종류 및 기간, 그로 인한 피침해 법익의 내용과 종류, 범행 후의 정황, 선고형량 등을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목적과 위 입국금지사유에 관한 법 규정의 취지, 그리고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8호에서 정한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횡령금액 등을 모두 변제하였고, 대한민국으로 유학을 온 1991년부터 장기간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위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사실상 국내에서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을 하면서 주된 생활 및 사업의 기반을 대한민국에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5992판결(상급심))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비자와 관련하여서 사증발급인정서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이는 특정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내에서 초청자가 대리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외국인이 외국에서 사증발급인정서의 제출로 즉시 사증이 발급되는 제도이다. 통상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장기사증의 발급은 단기 사증에 비하여 초청자의 적격여부 등 고려 사항이 많아 복잡한 절차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그런데, 초청자인 국민이 이러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는데 불허가 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가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처분성과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례가 있기는 하나(제주지방법원 2006.6.7. 선고 2005구합733), 대다수의 판례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 신청 불허처분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은 외국인에 대한 초청인 내지 절차적 신청 대리인으로서의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지 거기서 더 나아가 독자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정도로 법률상 보호를 받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초청인에게 그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독자적으로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처분성과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합37117판결 외 다수).

한편, 재외공관에 비자신청을 하였는데 불허가 되었을 때,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는 있을까? 여기에 대하여는 불허가 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거부행위는 주권적 사항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나, 과거에 국내에서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졌던 외국인의 행정심판 청구인적격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0210613, 재결일자 2003-04-28, 입국불허 및 복수비자 취소처분 취소청구), 외국인이 결혼이민 사증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된 사안에서 법원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고 사증발급 신청인으로서 사증발급과 관련된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도 있다(서울고등법원 2014.9.5.선고2014누41086판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15호, 2020. 2. 18.,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15호, 2020. 2. 18., 일부개정]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까지 및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개정 2018. 9. 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18.>
1.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라목·바목 또는 사목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3.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③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9. 18.>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6. 11.>
⑤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9. 18.>
⑥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사 도우미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국적, 성명 및 직종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또는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F-5)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⑦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법무부차관과 고용노동부차관은 그 심의 안건을 미리 협의하여 공동으로 상정하고, 심의·의결된 사항을 법무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8. 9. 18.>
1.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가목 7)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간 허용인원
2.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업장별 고용인원의 상한
⑧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8.>
1.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가목 7)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증발급에 관한 중요 사항
2. 제7항제1호에 따라 결정된 연간 허용인원의 국적별 세부 할당에 관한 사항(이 경우 거주국별 동포의 수, 경제적 수준 및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한다)
3. 그 밖에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국 및 체류활동 범위 등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11. 11.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약칭: 재외동포법)

이전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시행2000.12.29] [법률 제6307호, 2000.12.29, 일부개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시행2001.1.1] [법률 제6328호, 2000.12.3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99헌마494 2001.11.29 1.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1999. 9. 2. 법률 제6015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2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1. 27. 대통령령 제16602호로 제정된 것) 제3조는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2. 이들 조항은 200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99헌마494 2001.11.29 1.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1999. 9. 2. 법률 제6015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2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1. 27. 대통령령 제16602호로 제정된 것) 제3조는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2. 이들 조항은 200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6조(國內居所申告) ① (생 략)	**제6조(國內居所申告)**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사실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14일 이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국내거소신고증 발급등) ① (생 략)	**제7조(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국내거소신고증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거주국과 대한민국안의 거소등을 기재한다.	② ---------- 거소 등을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주민등록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 거래관계 등----------.
제11조(부동산거래등) ① (생 략)	**제11조(부동산거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등을 한 경우에는 동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1년 이내---------- 매각처분 등을 ----------.
제12조(금융거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등 국내 금융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제12조(금융거래)** ---------- 출금 등 ----------

다음

이전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시행2004.3.5] [법률 제7173호, 2004.3.5, 일부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2005.12.29] [법률 제7768호, 2005.12.29, 일부개정]	다음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관한法律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99헌마494 2001.11.29 1.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1999. 9. 2. 법률 제6015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제2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1. 27. 대통령령 제16602호로 제정된 것) 제3조는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2. 이들 조항은 200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 ---------- 한다) [99헌마494 ---------- 아니한다. 2----------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생 략)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현행과 같음)	
	②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6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법률 제7499호 국적법중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때 2.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 3.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출입국과 체류) ① (생 략)	**제10조(출입국과 체류)** ① (현행과 같음)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FPRI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약칭: 재외동포법)

이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2011.1.1] [법률 제10275호, 2010.5.4, 타법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2011.4.5] [법률 제10543호, 2011.4.5, 일부개정]	다음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생 략)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6세 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38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약칭: 재외동포법)

이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6. 19] [법률 제12421호, 2014. 3. 18, 타법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 22] [법률 제12593호, 2014. 5. 20, 일부개정]	다음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 ---------- 한---------- ---------- 외국국적동포 ----------.	
	1. 재외국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삭 제>	
	2. 외국국적동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삭 제>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외국국적동포---------- -----.	
	제12조(금융거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금융거래)**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 ----------.	
	제14조(건강보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14조(건강보험)**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약칭: 재외동포법)

이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30] [법률 제14173호, 2016.5.29, 일부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18.5.1] [법률 제14973호, 2017.10.31, 일부개정]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생 략)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제1호----------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
1.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법률 제7499호 국적법중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 제12조의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가.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2.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2.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FPRI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약칭: 재외동포법)

이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5. 1] [법률 제14973호, 2017. 10. 31, 일부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58호, 2018. 9. 18, 일부개정]	다음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생 략)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	
	1.·2. (생 략)		
	③·④ (생 략)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58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 | 전체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41세 이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41세 이상이면 무조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이에 대상자의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법무부 장관이 검토하여 부여 여부를 판단하도록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법리적 해석 논쟁의 여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 | 전체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758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에"를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로, "1일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 1999. 3. 1.] [법률 제5755호, 1999. 2. 5., 일부개정]

제11조 (입국의 금지등)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5. 정신장애인·방랑자·빈곤자 기타 구호를 요하는 자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자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1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무부장관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제1항 각호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44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4.]

행정절차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FPRI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행정절차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9.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조정·중재(仲裁)·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 10. 22.]

행정절차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6. 30., 2007. 11. 13., 2011. 3. 2., 2016. 11. 29.>

1.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4.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5.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국가배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결정에 관한 사항
8. 학교·연수원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연수생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
9.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
1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는 사항
1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따른 사정·결정·심결,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의 개념

○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함**.
○ 행정처분을 같은 내용으로 규정 :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 행정처분의 요소 : 행정청의 행위, 개별적·구체적인 법집행행위, 공권력적인 단독행위, 대외적 행위
○ 행정처분의 종류
  ▷ 신청에 따른 각종 처분 : 허가처분, 허가거부처분, 신고수리처분, 신고수리거부처분 등
  ▷ 불이익처분 : 시정명령, 정지처분, 취소처분, 폐쇄명령,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 거부처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 외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함.

행정법의 일반원칙

○ 법적 근거 : 헌법상 기본원리, 법의 일반원리, 조리상 원칙
○ 행정법상 일반원칙에 위반한 행정처분의 효과 :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반한 행정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이 되고,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된다.
○ 행정법의 일반원칙 :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 **신뢰보호원칙** : 행정기관이 어떤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공적인 견해표명)이 있고 그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
  ▷ 신뢰보호의 요건
    -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공적인 견해표명)**
    - 신뢰 보호 가치(귀책사유 無)
    - 상대방의 일정한 조치
    - 선행조치와 상대방의 조치간의 인과관계
    -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처분
    - 개인의 이익 침해 발생
    ※ 적용상 한계 :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의 현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
○ **비례의 원칙** :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목적과 수단 간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 요건
    - 적합성 : 행정수단이 그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
    - 필요성(최소침해성) : 행정기관은 **행정목적 달성에 적합한 다수의 수단 중에서 상대방과 일반국민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
    - 상당성(비교형량, 협의의 비례원칙) : 행정기관의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공익보다 큰 경우에는 그 조치를 취하여서는 안됨
  ▷ 비례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비교형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처분상대방이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 처분상대방의 사실은폐·사행행위·허위행위가 있는 경우
○ **평등의 원칙** :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행정청은 재량권이 있는 행정활동에 있어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행한 결정에 행정청은 구속되어 처분상대방에게 동일한 결정
    - 행정의 재량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
    -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후적인 사법통제를 확대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행정기관이 공권력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실질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됨
  ▷ 인정 요건
    - 행정청의 행정작용이 있어야 함
    - 행정작용은 상대방에 부과하는 반대급부와 결부
    - 행정작용과 상대방의 급부가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야 함

사건 일지

미국시민권 취득, 가수 유승준 입국 거부

법무부, '한국의 이익 해하는 행동 염려' 출입국 규제

이효성 기자 desk@lawtimes.co.kr | 입력 : 2002-02-05 오전 11:04:34

페이스북
트위터
인쇄
메일보내기
기사스크랩
스크랩 보기

병역대상자임에도 불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씨(26)의 입국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거부됐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일 새벽 美 LA발 대한항공 KE012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유씨로부터 '스티브 승준'이라는 명의로 된 미국 여권을 넘겨받아 출입국규제자 검색을 실시, 규제대상에 올라있는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유씨는 이날 오전 11시20분 도쿄 경유 LA행 대한항공 KE001 편으로 미국으로 되돌아 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병무청으로부터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 협조요청서를 접수받은 후 출입국관리법을 검토, 유씨가 입국금지 대상을 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1항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3호)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입국금지를 통보받은 유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이렇게까지 큰 문제로 발전할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으며 시민권 취득 목적이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광식(閔光植) 법무부 입국심사과장은 "지난해 11월 가정사정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유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병역기피 의도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입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말한 후 "앞으로 법무부는 국내 병역대상자들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 병무청으로부터 해제요청이 없는 한 유씨의 입국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바로서기협의회(회장 박종석)는 4일 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1976년 12월 15일

2001년9월1일	유승준, 공익근무요원 판정
2002년1월	공연 등을 이유로 해외로 출국
2002년1월18일	미국 LA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 밟고 대한민국 국적 포기
2002년2월2일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유승준 입국금지
2003년6월27일	약혼녀 부친 문상을 위해 3일 동안 일시적 입국을 허가받고 방문

2001.9.11 미국 테러 발생

4월 입대예정

2003년 2월 입국 해제 요청 -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탄원서를 접수

2004년 9월 25일 미국에서 **결혼**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 주례

2005년 : 2013년 까지 8년만 기다리자

2011년 : 2015년 까지 4년만 기다리자

비자 신청 가능한 것으로 판단!

2015년9월	재외동포 비자(F-4) 신청 → LA 총영사관 발급 거부
2015년10월21일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 LA 총영사관 상대로 소송
2016년9월30일	서울행정법원, 원고 패소
2017년2월23일	서울고등법원, 원고 패소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 :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019년7월11일	대법원,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2019년9월16일	유씨, "내 입으로 군대가겠다고 한 적 없어" 억울함 호소
2019년11월15일	파기환송심 유승준 승소, LA 총영사관 재상고
2020년3월12일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유승준 최종 승소

만24세

만25세

2002년 병무청 :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

2005년12월 만36세 체류자격부여불가 예외 추가됨

2011년 만34세

2013년 만36세

2011년 만36세->만38세로 변경

만38세

만39세

2017년 만40세

2018년 만41세

2017년10월 만38세->만41세로 변경 (18년 5월 시행)

2018년 만41세&법무부장관이 부여(해석 명확화)

만42세

만43세

FPRI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1976년 12월 15일

2001년9월1일	유승준, 공익근무요원 판정
2002년1월	공연 등을 이유로 해외로 출국
2002년1월18일	미국 LA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 밟고 대한민국 국적 포기
2002년2월2일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유승준 입국금지
2003년6월27일	약혼녀 부친 문상을 위해 3일 동안 일시적 입국을 허가받고 방문
2015년9월	재외동포 비자(F-4) 신청 → LA 총영사관 발급 거부
2015년10월21일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 LA 총영사관 상대로 소송
2016년9월30일	서울행정법원, 원고 패소
2017년2월23일	서울고등법원, 원고 패소
2019년7월11일	**대법원,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2019년9월16일	유씨, "내 입으로 군대가겠다고 한 적 없어" 억울함 호소
2019년11월15일	파기환송심 유승준 승소, LA 총영사관 재상고
2020년3월12일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유승준 최종 승소**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44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4.]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0031323545044468&NG2_P

FPRI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병역의무자의 국적선택(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 주어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1항).
- 출생이나 「국적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이하 '복수국적자'라 함)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
- 다만, 복수국적자 중 병역준비역에 편입(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까지)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 선택절차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위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해야 하고(「국적법」 제14조의2제1항), 이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2제4항).

병역의무 회피 목적의 국적이탈자에 대한 제한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9조제2항제3호).
- 외국국적동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규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규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재외동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약칭: 재외동포법)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17호, 2020. 2. 4., 일부개정]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1. 4. 5., 2017. 10. 31., 2018. 9. 18., 2019. 12.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가.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2.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의 활동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청와대 국민청원답변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

참여인원 : [259,864명]

카테고리 기타 청원시작 2019-07-11 청원마감 2019-08-10 청원인 naver.***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안녕하십니까? 국민소통수석 윤도한입니다. 오늘 '유승준씨 입국금지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 7월 11일, 유승준씨 사증발급 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시작됐습니다. 닷새 만에 2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지난 2015년 유씨는 사증발급을 거부한 주LA총영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사증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든다"는 심경을 밝히셨습니다.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수천만 명의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이라며 "다시 유승준씨의 입국을 금지시켜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청원 답변에 앞서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분들과 지금도 더운 날씨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계신 국군장병들, 그리고 나라를 믿고 소중한 아들을 군대에 보내주신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강력한 국방과 안보가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부도 헌신을 잊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청원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17년 전 내려졌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고, 당시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유씨는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고, 곧바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유씨의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됐습니다. 병역의무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당시 병무청장은 국군장병의 사기저하, 병역의무 경시, 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장관에게, 유씨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씨에 대해 2002년 2월,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고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5년, 유씨측은 주LA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영사관은 비자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유씨는 주LA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대법원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기피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또, "재외동포법상 비자 신청 당시 38세가 지난 동포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재외동포법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사관이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문서가 아닌 전화로 통보한 것도 행정절차법 위반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다시 재판을 열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이달 20일로 잡혀 있습니다.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국회는 유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이 강화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한 40세 이하 남성에 대해 F4비자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37세까지만 제한했던 것을 지난해 8월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40세까지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개선 결과 실제로 최근 5년간 미귀국자의 비율은 2015년 0.05%에서 2016년 0.04%, 2017년 0.03%, 그리고 작년엔 0.02%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학력을 속이고,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병역면탈자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277명('15~'19.7월말)의 병역면탈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도개선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시키거나,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공직임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380

기타정보
-관련 법조인-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7189)

김주현 부장판사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 2017-02-23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누68825)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16누68825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38874)

한창훈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2019누4999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외동포라는 신분에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F-4 하나였기 때문에 그 비자를 신청한 겁니다
특별법인 재외동포법에 의한 비자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요
재외동포법에 의한 비자는 F-4 비자가 유일했던 겁니다

FACT CHECK
???

https://theqoo.net/square/1205915488

FPRI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광장 윤종수

- 2016 - 현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2014 - 2015, 법무법인 세종(SHIN&KIM) 변호사
- 2013 - 2017,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사
- 2013 - 현재,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 위원장
- 2013 - 현재,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011 -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 2011 - 현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009 -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 2005 - 현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프로젝트 리드 및 이사
- 2014 - 현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사
- 2012 - 2014,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0 - 200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2 - 2003, 조지 워싱턴 대학교 (방문연구원(Visiting Scholar)
•1983 - 198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64년 10월 17일 (55세)
성별 남성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1년? 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32회 사법시험(1990)**에 합격하여 임용되었다.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 법원 지적재산권 커뮤니티, 법원 지적재산권분야 국제규범연구반 등에서 간사를 역임했다. 천리안 AV 동호회의 시삽으로 활동했다.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인터넷 거버넌스, IT 등의 법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다 2013년 퇴임하고, 이후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이다.

처분이 아님을 주장

대법관 김재형

•2016년 9월 ~ 대법원 대법관
•2013년 ~ 2016년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2010년 ~ 2016년 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회 위원
•2009년 3월 ~ 2016년 9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년 2월~ 2014년 2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2008년 ~ 2009년 법무부 동산·채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법 재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06년 10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1년 10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1997년 10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1995년 9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1995년 3월 ~ 1995년 8월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4년 3월 ~ 1995년 2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2년 3월 ~ 1994년 2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89년 3월 ~ 1992년 2월 대한민국 공군 법무관
•1987년 3월 ~ 1989년 2월 제18기 사법연수원
•1986년 10월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0년 ~ 1983년 명지고등학교
1983년 ~ 1987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학사
1988년 ~ 199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1991년 ~ 199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
1987년 연수원 18기

김재형(金哉衡, 1965년 ~)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다.
본관은 김해이며, 전라북도 임실군 출신이다.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2년 판사로 임관한 지 3년 만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이직하여 민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했다.
2016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제청을 하여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학계 출신의 대법관 후보자가 거론될 때마다 후보자로 거론되어 왔던 민사법 전공이며 단순히 민법학에 그치지 않고 도산법, 비교법 등에서 연구활동과 실무 경험이 있다. 김재형 대법관이 주심 대법관으로 참여한 성완종 리스트의 홍준표,이완구 피고인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FPRI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광장 윤종수

- 2016 - 현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2014 - 2015, 법무법인 세종(SHIN&KIM) 변호사
- 2013 - 2017,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사
- 2013 - 현재,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 위원장
- 2013 - 현재,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011 -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 2011 - 현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009 -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 2005 - 현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프로젝트 리드 및 이사
- 2014 - 현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사
- 2012 - 2014,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0 - 200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2 - 2003, 조지 워싱턴 대학교 (방문연구원(Visiting Scholar)
•1983 - 198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64년 10월 17일 (55세)
성별 남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32회 사법시험(1990)**에 합격하여 임용되었다.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 법원 지적재산권 커뮤니티, 법원 지적재산권분야 국제규범연구반 등에서 간사를 역임했다. 천리안 AV 동호회의 시삽으로 활동했다.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인터넷 거버넌스, IT 등의 법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다 2013년 퇴임하고, 이후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이다.

처분이 아님을 주장

박태준 (朴泰俊)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22기 동아대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사직고 1회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 동아대 대학원 기간 체크 필요...
1991년? 연수원 22기?

사법연수원 22?

신봉기와 연결? (확인필요)

동아대 조교수, 부교수
1997.09 – 2006.02

FPRI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처분이 아님을 주장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school O Professor

Dong-a University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보, 공보담당연구관(보)로 근무했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에서 Constitutional Research Officer(으)로 근무했음

독일 Muenster대학교에서 법학 전공

부산동고등학교 졸업

성지중학교 (부산) 졸업

남천초등학교 졸업

경상남도 거창 출신

1,364명이 팔로우함

이재화와 연결? (확인필요)

https://www.facebook.com/bongki.shin.5

학력 (신봉기)

번호	학위구분	학교명	년도 및 기간	전공명
1	(법학박사, Dr.jur)	독일 뮌스터대 법과대학	1989.05.30.	

경력 (신봉기)

번호	내용	기관명	기간
1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4급), 공보담당연구관(겸)		1989.11 - 1997.
2	동아대 조교수, 부교수		1997.09 - 2006.02
3	한국공법학회 선정 학술장려상(1998),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장(2004)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회 우수논문상(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상(2013) 등 수상		1998.06 - 현재
4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2004.02 - 현재
5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05.04 - 2011.04
6	사법시험 2차출제및채점위원(2005, 2007)		2005.06 - 현재
7	경북대 법학연구소장, 법학연구원장		2007.08 - 2010.06
8	변호사시험(제1회, 제2회) 출제및채점위원(2012, 2013), 한국공법학회 선정 학술장려상(1998),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장(2004)		2011.12 - 현재
9	제3대 법학전문대학원장		2012.06 - 2014.06

신봉기(52) 교수가 6월 7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14년 6월 6일까지 2년.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원장

신 원장은 30세 때인 1989년 5월 독일 뮌스터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와 공보담당연구관으로 재직하다가 동아대 법대 교수를 거쳐 2006년 2월 경북대 교수가 되었다. 전공분야는 행정법.

경북대 법학연구소장과 법학연구원장을 역임했으며,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및

제1회 변호사시험(2012)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98년 한국공법학회 학술상, 2009년에 한국비교공법학회 우수논문상을 받았으며, 현재 한국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FPRI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처분이 아님을 주장

이재화(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https://ko.wikipedia.org/wiki/이재화_(1963년)

학력 [편집]

- 양북초등학교
- 부산동고등학교
-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 [편집]

-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1999년: <낮은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2000년 1월: 민주언론운동연합 정책위원
- 2000년 12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 2004년 4월: 오마이뉴스 감사
- 2007년: 한국농촌공사 사장추전위원회 위원, 대한주택공사 택지조성원가 자문위원
- 2008년: 강동구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 2009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조성원가 심의위원
- 2009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 2010년: 강동구청 법률고문
- 2011년: 노원구청, 도봉구청, 관악구청 법률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재화
(李在華)

출생년도	1963년 , 57세
직 업	[現] 변호사
소속기관	[現] 법무법인향법 변호사
유료정보	기본정보, 학력(2건), 경력(5건), 가족/지인(0건), 활동사항(0건), 작품(0건)

"만약 당신이 미래를 꿈꾸지 않거나 지금 기술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건 곧 낙오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윈 쇼트웰(Gwynne Shtwell, SpaceX CEO, COO)

감사합니다

(facebook.com/sangshik, mikado22001@yahoo.co.kr)

기사 체크

FPRI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중도일보

뉴스 중도TV 전국 오피니언 버주얼 핫클릭 스포츠 PDF

방송/연예 정치이슈 사회이슈

현재위치 : 홈 > 핫클릭 > 방송/연예

"17년 만에 한국땅 밟나"...유승준 아내 미모 실화? '여배우 뺨쳐'

가- 가+

18일 가수 유승준이 화제다.

18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유승준이 등극한 가운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유승준 미모의 아내 오유선"이란 제목의 글과 사진이 새삼 이목을 집중시킨다.

공개된 사진 속 유승준은 아내 오유선과 함께 웃으며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다.

특히 그의 아내 오유선의 아름다운 여배우급 미모가 돋보였다.

유승준은 지난 2006년 아내 오유선과 결혼 2년 만에 미국 LA에서 첫 아들을 출산했으며, 이어 2010년에 중국에서 활동하던 중 둘째를 얻었다.

90년대 추억의 스타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대중들은 유승준을 비난했으며 병무청 또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같은 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올 7월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날 판결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 파기 환송심 첫 공판은 이달 20일 서울고등법에서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시작한다.

2002년 당시 재외동포법에서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법 개정으로 이 나이는 만 41세로 상향됐다. 1976년생인 유승준의 경우 현재 41세가 넘었고, 재외동포로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체류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 파기 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결 요지에 따라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유승준은 17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확대됐다.

한편 유승준은 노래 '가위', '사랑해 누나', '나나나', '찾길 바래' 등을 발매한 90년대 최고의 스타였다.

한세화 기자 ent88@

41세 이상이면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법무부장관 허가가 별도로 필요한 사안임
그리고 병역기피의 경우는 F4비자 발급 불가임

2002년 법은 예외조항이 없었음, 2005년도에 36세 예외규정 신설됨

출처 :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90918000543522:

FPRI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 한국경제 사회

가수 유승준, 美 라구나 비치서 결혼

입력 2004.09.26 10:16 | 수정 2004.09.26 10:16

유승준의 아버지 유정대(59.캘리포니아 플러튼) 씨는 "결혼 이후 해외공연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돼 일단 치노 힐스에 자리를 잡은 뒤 내년쯤 새 집을 지어 입주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겨레 문화생활

http://www.hani.co.kr | 한토마 | 사설·칼럼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 국제 | 문화 |
영화 | 여행·여가 | 책·지성 | 엔터테인먼트 | 종교 |

가수 유승준, 미 라구나 비치서 결혼

△ 가수 유승준 결혼 재미교포 가수 유승준(28.미국명 스티브)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구나 비치 몬티지 리조트 앤 스파에서 가족과 친지, 하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여년간 사귀어 온 약혼녀 오유선(27.크리스틴) 씨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연합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9000000/2004/09/009000000200409261503001.html

유승준아버지 오열 "美 육사 보내려 해...가족인데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나"

입력 2019-10-18 10:48

유승준 아버지가 아들이 17년간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슬픔을 드러내며 오열했다.

17일 방송된 JTBC 시사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특권층 병역 비리의 숨겨진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유승준 부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17년 입국 금지의 전말을 살폈다.

유승준은 "제가 (입대를) 약속하고 출국했는데 마음을 바꾼 거에 대해 충분히 괘씸하고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풀리겠지 하고 생각하기도 했고 잊고 살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영영 못 돌아가겠구나 싶었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고 말했다.

유승준의 아버지는 "공부만 조금 잘했으면 미국 육사에 보내려고 했다. 얘가 왜 군대에 못 가겠느냐. 신체 좋겠다, 성격 좋겠다. 군대 못 갈 거 없었다"라며 "필수적이고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시민권 취득이다. 그걸 내가 너무 강박하게 하는 바람에"라고 설명했다.

유승준의 아버지는 "9·11 테러 이후 이민 정책이 이민자들에게 폐쇄적으로 변했다"라며 "생이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고백했다. 또한 "이민자의 삶이 쉽지 않다. (시민으로) 보장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그만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 연예 생활이 뭔데, 쟤는 내 가족인데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당시 생각을 밝혔다.

유승준 약속 후 출국?

이어 "17년 전 내가 아들에게 잘못 권고하는 바람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라며 "아들이 테러분자도 아니고 강간범도 아니고 무슨 죄를 지었나. 17년 동안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어지려나' 하면서 1년에 몇 번씩 17년간 해왔다"면서 오열했다.

유승준은 "억울하다는 것보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 잘못했다. 그런데 제가 범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 않나. 범법자도 아닌데 한국 땅을 못 밟게 된다는 게 억울하다"라며 "부디 이 인터뷰를 통해 제 마음이 전달됐으면 한다"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1월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 기피 의혹이 일자 병무청은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를 요청,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17년간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최근 한국에서 사증발급거부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유승준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론은 오는 11월 15일 열린다.

유정선 기자 dwt84@etoday.co.kr 자세히보기

가수 유승준 프로필
나이/출생/고향: 197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적: 미국
본관: 강릉 유씨
키, 혈액형: 173cm, A형
학력: 한세대학교 음악학과(중퇴) - 美 베데스다대학교 신학과
데뷔: 1997년 1집 <West Side>
소속사: JC그룹 인터내셔널

당시 유승준의 이미지는 바른 청년 이미지로 남녀노소 세대를 가리지 않고 두루 인기가 있었던 연예인이었죠. 방송에서도 군대에 대해 꼭 다녀 오겠다고 밝히면서 그야말로 극호감 연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영이 코앞으로 다가온 2001년 즈음에 해외 출국이 허락되었는데요.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영장이 나온 입영 대상자는 해외도주를 우려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출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와 일본 공연 당위성을 설명하며 간곡히 허가를 요청했고, 지인 2명이 직접 보증까지 서 주면서 결국 허가가 납니다.

https://spmusic.tistory.com/1138

스티븡 유가 받은 병역혜택

서어엉자아앙 2019.07.16

https://www.dogdrip.net/217222433

FACT CHECK 필요

뮤직비디오 찍다가 허리 다쳐서 4급 공익판정
4급에 만족하지 않고 면제 테크를 타려고 미국 병원에서 진단서 받았으나
병무청이 지정병원에서 다시 끊어오라고 해서 포기

원래 2001년 11월에 입대해야 하는데 2002년 4월로 입영 연기 신청, 병무청 특별히 허가

당시 국방부의 유승준 공익 입대시 해택은
1. 여의도 배치
2. 6개월 단기공익 또는 공익근무 이후 영리 목적의 활동 및 공연/콘서트 허용이었음

유승준이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국방부가 나서서 해택까지 준다고 함

일본공연으로 해외출국 신청. 하지만 영장이 나와서 거부당함
병무청에 보증인, 각서까지 써가면서 병무청에서 특별하게 해외출국 허가
일본 공연 직후 미국으로 튀어서 시민권 획득

외국인으로 병역의무 사라짐 입국금지

결론 6개월 공익도 안갈려고 하다가 추방 당함 원래 갈생각 없었음

https://www.dogdrip.net/index.php?mid=dogdrip&sort_index=popular&m=0&page=1&search_target=tag&search_keyword=%ED%93%A8%EB%A6%AC&document_srl=217222433&cpage=2

최신기사

유승준 사죄하며 거짓말? 병무청 "직접 보증인세워" 반박

기사입력 2015-05-21 07:07

[헤럴드경제]병역기피 논란에 대해 사죄했던 유승준의 인터뷰 내용이 병무청의 반박으로 거짓말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20일 병무청은 "가수 유승준이 지난 2002년 1월 일본 콘서트를 앞두고 직접 지인 2명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콘서트가 끝나면 대한민국에 돌아오겠다고 서약하는 조건으로 병무청의 허가를 받은 뒤 일본으로 출국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승준은 앞서 방송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인터뷰에서 "출국하기 위해 병무청 직원 2명이 보증인으로 섰다, 병무청 직원 2명이 보증섰다는 사실을 출국하고 나서 알았다. 나는 그 분들이 누군지 몰랐고 소속사가 알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병무청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13년 전에도 국민을 기만하더니 왜 다시 나와서 또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스티브 유(유승준)라는 미국인이 대한민국을 우습게보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인이 병무청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보증인인 지인 2명이 유승준과 동행했는지 여부는 스티브 유 본인만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1997년 한국에서 데뷔해 '가위', '나나나' 등으로 큰 사랑을 받았지만 2001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4급 판정을 받은 후에도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적 호감을 샀다. 하지만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 법무부로부터 영구 금지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

병무청은 스티브 유로부터 일본과 미국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그의 출국을 허가해줬다

"입대하면 서른이 되고, 댄스가수로서 생명이 끝난다. 미국에 있는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군대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스티브 유는, 그리고 '네가 군대에 가는 것이 더 이기적인 행동일 수 있다'라며 (?!) 입대하지 말자고 강력히 권유했다는 그의 가족들은 이런 짓을 저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상상을 안 해본 듯하다.

아버지와 오랜 상의 끝에 내린 결정이기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떠나기 전까지도 자숙 기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용서해주시면 돌아오겠다고 밝히고 간 것을 보아, 이 입국금지가 한시적일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미국시민권취득에 병역의무 기피의 고의를 인정한 판례를 추가한다.

① 원고는 2001. 8.경 6집, 2002. 5.경 7집 음반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직후인 2002. 1. 24. 피고에게 여행목적을 공연·음반출판으로 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한 점에 원고가 2002. 2. 2. 입국거부된 후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계속 가수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로서는 미국 시민권을 신청한 후에 병역법이 개정되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국내에서 가수활동을 하면서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았으리라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1차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 일본 공연과 미국에 있는 가족 방문을 위하여 3개월간 유예를 받아 2002. 2. 14.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여행목적을 공연으로, 여행기간을 2002. 1. 12.부터 2002. 2. 5.까지로 하여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입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병역의 의무를 면하게 된 점, ④ 원고 소속사 대표이사이자 고모부인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2차 미국 시민권 선서식 날짜를 통보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원고는 2차 미국 시민권 선서식 날짜가 2002. 1. 18.임을 알고 위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만일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불응할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서울행법 2016. 9. 30., 선고, 2015구합77189, 판결 : 항소]

https://namu.wiki/w/%EC%8A%A4%ED%8B%B0%EB%B8%8C%20%EC%9C%A0%20%EB%B3%91%EC%97%AD%EA%B8%B0%ED%94%BC%20%EC%82%AC%EA%B1%B4

병무청장은 2002. 1. 28. 법무부장관에게 '원고는 공연을 위하여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는데, 원고가 재외동포의 자격으로 입국하여 방송활동, 음반출판, 공연 등 연예활동을 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이 병역의무를 경시하게 되며 외국국적 취득을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고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서울행법 2016. 9. 30., 선고, 2015구합77189, 판결 : 항소]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6&seqnum=1695

미국제도 변경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금융자산신고제(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단독] '민변' 회원 유명 변호사들, 1조 원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사건 주범 변호 나선 내막

향법 "누구나 변호 받을 권리, 민변과 연결은 과장" vs 피해자 측 "수임료 출처는 범죄 행위로 벌어들인 돈" 성토

[제1394호] 2019.01.22 10:53

[일요신문] 확인된 것만 1조 원에 달하는 사기·유사수신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향법'이 두 사건 재판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향법은 소속 변호사 전원이 인권 옹호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표방해 온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향법 소속 심재환, 이재화, 이정희 등 변호사 5명이 이철 씨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FPRI
Fu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처분 주장

중앙대학교 CHUNG-ANG UNIVERSITY

김중권 | 고려대/법학 | 행정법 | 행정법

중앙대 로스쿨 김중권 교수,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 선정

김대연 기자 | 승인 2018.03.13 12:28 | 댓글 0

[베리타스알파=김대연 기자] 중앙대는 법학전문대학원 김중권 교수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개헌안 준비작업을 담당하는 기구로 총 3명의 위원으로 구성, ▲총강/기본권 ▲지방분권/국민주권 ▲정부형태의 3개 분과와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국민참여본부를 두고 있다. 김 교수는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 소속으로 총 7명의 위원이 활동할 예정이며 지방자치 강화 뿐만 아니라 경제조항 등에 관한 내용까지 다룰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충북대 교수를 거쳐 중앙대 교수로 재직했고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최우수논문상'에 선정돼 우수한 연구성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1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위가 마련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